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1. 6. 1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8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 5. 검토의견

가. 행정문화국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p)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82,559,889,000	81,471,387,690	81,372,999,010	99.8%
행정지원과 (89p)	4,281,208,000	4,826,272,690	4,826,272,690	100.0%
문화체육과 (90p)	5,944,355,000	4,185,103,200	4,089,096,930	97.7%
마을자치과 (91p)	68,459,872,000	68,418,382,000	68,418,055,270	99.9%
교육지원과 (93p)	3,565,749,000	3,873,021,060	3,870,965,380	99.9%
민원여권과 (94p)	308,705,000	168,608,740	168,608,740	100.0%

-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825억 5,988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4억 7,138만 7천원, 세입결산액은 813억 7,299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9.8%임.

## 2)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241,824,713,450	206,564,903,606	13,380,561,690	859,845,907	21,019,402,247	8.6%
행정지원과 (167p)	100,831,313,000	93,314,296,151	671,665,000	129,640,390	6,715,711,459	6.6%
문화체육과 (170p)	33,263,148,810	24,087,062,971	4,027,161,530	71,849,077	5,077,075,232	15.2%
마을자치과 (175p)	86,201,973,800	78,783,096,542	5,895,638,620	431,972,959	1,091,265,679	1.2%
교육지원과 (179p)	20,197,448,840	9,135,196,782	2,786,096,540	226,383,481	8,049,772,037	39.8%
민원여권과 (183p)	1,330,829,000	1,245,251,160			85,577,840	6.4%

○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현액은 2,418억 2,471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065억 6,490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8,056만 1천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5,984만 5천원, 집행잔액은 210억 1,940만 2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8.6%로 2019회계연도의 4.8%보다 3.8% 증가하였음.

###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

####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7,905,815	6,567,686	5,452,156	6,854,896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청사관리 외 1건	660,257	87,615	87,615	562,820	심사 보조자료 157p참고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문화 체육과	구립합창단 운영 외 6건	5,380,950	2,296,687	2,187,963	3,170,776	심사 보조자료 173P참고
마을 자치과	임시선별진료소 구축및운영 외 8건	4,098,726	2,833,173	2,715,004	1,281,562	" 188~189P참고
교육 지원과	금천문화복합시설건 립 외 4건	7,765,882	1,350,211	461,574	1,839,738	" 204~205p참고

- 행정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4개 부서에 23건 68억 5,489만 6천원  
으로서, 행정지원과 2건 5억 6,282만원, 문화체육과 7건 31억 7,077  
만원 6천원, 마을자치과 9건 12억 8,156만 2천원, 교육지원과 5건 18  
억 3,973만원 8천원임.

※ 결산서 902~904p, 심사 보조자료 157, 173, 188~189, 204p 참고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4,057,131	13,126,190	6,268,717	6,525,664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216,420	2,003,959	1,895,114	108,845	심사보조자료 157p참고
문화 체육과	시흥행궁전시관 및 체험관조성 외 1건	1,522,267	1,521,507	665,121	856,385	" 174P참고
마을 자치과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외 1건	7,600,453	7,589,381	2,975,304	4,614,076	" 189P참고
교육 지원과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외 4건	2,717,991	2,011,343	733,178	946,358	" 205p참고

- 행정문화국 사고이월사업은 4개 부서에 10건 65억 2,566만 4천원  
으로서, 행정지원과 1건 1억 884만 5천원, 문화체육과 2건 8억  
5,638만 5천원, 마을자치과 2건 46억 1,407만 6천원, 교육지원과 5건  
9억 4,638만 8천원임.

※ 결산서 902~904p, 심사 보조자료 157, 174, 189, 205p 참고

나)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행정문화국(19건)			20,813,520	628,430	628,430	
행정지원과 (1건)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204-02 직급보조비	2,653,636	38,719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전용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241,690		38,719	
문화체육과 (5건)	생활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232	2,616		어울샘 운영 금천문화재단 위탁을 위한 출연금 편성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3,470,040		2,616	
	생활문화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20,668	10,954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3,472,656		10,954	
	생활문화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17,200	12,100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3,483,610		12,100	
	생활문화 활성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	250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306-01 출연금	3,495,710		250	
	서울형 북스타트 독서사업	306-01 출연금	6,686	4,286		
	201-01 사무관리비	18,300		4,286		
마을자치과 (3건)	마을공간 활성화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	5,000		커뮤니티센터 내.외부 쉼터 조성을 위한 물품 구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3,132	90,000		남부도로사업소 주민 편익 시설 인테리어 및 사인물 공사비 확보
		401-01 시설비			90,000	
	금천형 협치제도구축 (지역사회혁신계획)	201-03 행사운영비	15,000	11,000		협치지원관(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필요예산 확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800		11,000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교육 지원과 (10건)	금천혁신교육 지운 구영	301-12 기타보상금	20,000	20,000		코로나19로 취소 및 축소된 사업예산을 학교방역 및 온라인수업 지원예산으로 활용	
		201-01 사무관리비	73,514		20,000		
	금천혁신교육 지운 구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4,000	72,404			
		201-01 사무관리비	93,514		72,404		
	금천혁신교육 지운 구영	307-05 민간위탁금	403,300	58,297			
		201-01 사무관리비	165,918		58,297		
	고 등 학 교 무 상 교 육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229,140	229,140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개정 되기 전 편성된 무상교육 자치구 부담예산을 법 개정 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요청
		703-01 법정전출금			229,140		
	모 직 업 체 험 장 운 영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3,400	2,000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예산을 학교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활용
		금천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94,864			
금천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6,400	14,164				
	201-03 행사운영비	80,700		14,164			
시 글 로 별 인 재 학 당 운 영	301-12 기타보상금	74,810	32,000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시흥 및 문성글로별 인재학당의 1학기 프로그램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타 반환금등으로 전용하여 수강생이 납부했던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함		
	802-03 기타반환금			32,000			
문 글 로 별 인 재 학 당 운 영	301-12 기타보상금	35,200	5,000				
시 글 로 별 인 재 학 당 운 영	802-03 기타반환금	32,000		5,000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교육지원과	문성 글로벌인재 학당운영	301-12 기타보상금	55,200	20,000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시흥 및 문성글로벌 인재학당의 1학기 프로그램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타 반환금등으로 전용하여 수강생이 납부했던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함
		802-03 기타반환금			20,000	
	나래품방과후 학교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	500		
		101-1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5,700		500	

- 행정문화국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에 19건 6억 2,843만원으로서, 행정지원과 1건 3871만 9천원, 문화체육과 5건 3,020만 6천원, 마을자치과 3건 1억 6백만원, 교육지원과 10건 4억 5,350만 5천원임.

※ 결산서 251~252p, 심사 보조자료 157, 172, 187, 202~203p 참고

#### 다)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계	241,824,713	21,019,402	8.6	3,889,506	273,789	1,690,351	15,165,755	
행정지원과	100,831,313	6,715,711	6.6		239,364	26,480	6,449,866	
문화체육과	33,263,148	5,077,075	15.2	3,353,080	1,663	102,877	1,619,453	
마을자치과	86,201,973	1,091,265	1.2	326,947	19,162	52,410	692,746	
교육지원과	20,197,448	8,049,772	39.8	209,478	1,960	1,508,583	6,329,750	
민원여권과	1,330,829	85,577	6.4		11,639		73,938	

-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집행잔액은 210억 1,940만 2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6%임.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38억 8,950만 6천원, 낙찰차액 2억 7,378만 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9,035만 1천원, 지출잔액 151억 6,575만 5천원임.

※ 결산서 167~184p, 심사 보조자료 149p 참고

라)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1,871,442,000	1,740,239,926	131,202,074	
행정 지원과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유지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736,000	31,736,000	0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등 업무(국내거주지 이동과정 자치구 특별관리)를 위한 기간제운전원 긴급채용 필요
	직원후생 복지및노사 협력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체제도입	사무 관리비	19,800,000	19,800,000	0	코로나19 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 및 관내환자 발생에 따라 직원감염에 대한 긴급예방대책으로 즉시 수급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구매
마을 자치과	구민구정 참여지원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04,000	3,349,187	754,813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608,737,000	1,573,492,759	35,244,241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매칭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7,065,000	111,861,980	95,203,020	정부재난지원금 추가재원 소요 발생금액 통보

-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예비비 집행 잔액은 3건 1억 3,120만 2천원이며,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없고, 전액 마을자치과 집행잔액임.

※ **결산서 263~264p, 심사 보조자료 158, 190p 참고**

## 나.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8.6%이며(검토보고서 3쪽 참고), 행정지원과 6.6%, 마을자치과 1.2%, 민원여권과 6.4%인 반면에, 문화체육과는 15.2%, 교육지원과는 39.8%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행정지원과의 경우

- 효율적인 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05,818,070원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강당,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청사 내 대관시설 이용이 대폭 감소하여 전기세, 냉방방비 지출이 동반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심사 보조자료 151쪽 참고)**

- 효율적인 청사관리의 「시설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108,845,000원 발생한 바, 이는 UPS 화재사고 발생(2020.11.20.)으로 소실된 UPS 신규설치 및 소방약재 구매수요가 발생하였고, 2020. 12월에 계약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것임.

**(심사 보조자료 151, 157쪽 참고)**

### ○ 문화체육과의 경우

-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 미집행률이 93.2%(2,962,000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미집행률이 34.2%(23,630,990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종교 기념일 현수막 게시 미추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미집행률이 높은 것이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 역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지원 단체의 지역축제 개최를 취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심사 보조자료 162쪽 참고)**

- 그 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미집행률이 24.9%(515,192,49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심사 보조자료 170쪽 참고)**

○ **마을자치과의 경우**

-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미집행률이 90.1%(53,162,67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편익시설(목욕탕) 미운영에 따라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집행하였기 때문임.(심사 보조자료 181쪽 참고)

○ **교육지원과의 경우**

-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의 「시설비」 미집행률이 94.8% (집행잔액 1,256,980,000원)에 달하는 바, 이는 독산3동 소재 꿈꾸는 나무를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건축비를 ‘신축’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임.

**(심사 보조자료 195쪽 참고)**

-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의 「시설비」 미집행률이 84.2%(4,847,535,600원)

에 달하는 바, 이는 금천구 범안로 1240-7(舊 독산2동 주민센터)에 금천문화복합시설(가칭 금천구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독산2동 1035-15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 협상이 결렬되어 토지 매입이 불가하게 된 것이 주 원인임.

**(심사 보조자료 198쪽 참고)**

- 행정문화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여러 행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되나,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고 ②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관련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